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19 발의연월일: 2021. 8. 19.

발 의 자:이 영·한무경·지성호

조명희 • 배준영 • 양금희

강민국 · 김승수 · 최춘식

김정재・金炳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또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거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 은행에서 위험성 부담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 개설 요청에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실명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8조의3·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71 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제5조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 2.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 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제8조의3(손해배상책임) ① 제8조의2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8조의2를 위반한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7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 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한다.

- 1.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 롯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몰수·추징) ①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 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9조 본문 중 "제17조의"를 "제15조의3 또는 제17조의"로 한다.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같은 부칙 제5조 중 "6개월"을 각각 "12개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11 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같은 부칙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의2(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 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 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 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 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후 매도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 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 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수탁을 하는 행위
- 2.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 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 하는 행위
-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외

제8조의3(손해배상책임) ① 제8조

<신 설>

<신 설>

의2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 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 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 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 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 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권은 청구권자가 제8조의2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 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 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 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 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 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 1.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
 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
 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 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가중한다.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정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신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설>

(생 략)

<신 설>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제19조(양벌규정)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 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 과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유)

제18조의2(몰수・추징) ① 제15조 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 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 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 액을 추징한다.

②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u>제17조의</u> 위반행위를 한 경 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금융회사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에관한 적용례) 금융회사등의 이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적용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금융거래등부터 한다. 다만, 이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

<u>제15</u> 조의3 또는 제17조의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금융회사등의 가상자산사
업자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u>12</u>
개월

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 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 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 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 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 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다.